

1. 개정이유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정비(안 별표 10의2)

플레이스택 총발열량 상시 모니터링 중 측정장비 등이 비정상 작동하는 경우, 발생원인, 개선계획 등을 관할기관에 보고하고, 향후 장비 조치 후 그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00. ~ 11.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3호 가목2) 다) (3)을 (4)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모니터링 장치, 발생 원인, 개선계획을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환경청장에게 전자문서,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모니터링 장치는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제3호 나목3) 가) (2) (다)를 (라)로 하고,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모니터링 장치, 발생 원인, 개선계획을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환경청장에게 전자문서,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모니터링 장치는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연간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0의2 제1호·제2호 (생략)		별표 10의2 제1호·제2호 (현행과 같음)	
제3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제3호 업종별 시설관리기준	
가. I 업종		가. I 업종	
배출 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배출 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1) 공정 배출 시설	(생략)	1) 공정 배출 시설	(현행과 같음)
2) 플레어스택 (배출 가스 연소탑)	가)·나) (생략) 다) (생략) (1)·(2) (생략) <u>< 신 설 ></u> (3) (생략) 라)·마) (생략)	2) 플레어스택 (배출 가스 연소탑)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2)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 대상시설,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 모니터링 장치, 발생 원인, 개선계획을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부터 48시간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0시부터 24시간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에 환경청장에게 전자문서,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모니터링 장치는 최초 비정상 작동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결함 여부 등을 재확인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연간점검 보고서에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행 (3)과 같음) 라)·마) (현행과 같음)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나. II업종		나. II업종	

